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인재의 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학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안 제2조)
- 장학회 임원의 구성과 선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
 -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
-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기금은 구미시의 출연금, 민간기탁금, 운용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장학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토록 규정(안 제14조)

3. 참고사항

- 「민법」 제32조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장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임원 등) ①장학회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용수익금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